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	1,672,700	1,885,000	2,069,900
	2등급	1,351,700	1,486,800	1,690,000	1,869,600
	3등급	1,295,400	1,350,800	1,417,200	1,455,800
	4등급	1,189,800	1,244,900	1,306,200	1,341,800
	5등급	1,021,800	1,068,500	1,121,100	1,151,600
방문요양	30분 이상	14,750	15,430	16,190	16,630
	60분 이상	22,640	22,380	23,480	24,120
	90분 이상	30,370	30,170	31,650	32,510
	120분 이상	38,340	38,390	40,280	41,380
	150분 이상	43,570	44,770	46,970	48,250
	180분 이상	48,170	50,400	52,880	54,320
	210분 이상	52,400	56,170	58,930	60,530
	240분 이상	56,320	61,950	65,000	66,770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44,240	46,250	47,670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경우(차량내목욕)	75,450	78,580	82,160	84,67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